



승인(협의)번호
제 36504 호

2012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시중노임단가)

본 조사 보고서는 2012. 1. 1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차 례 -

I.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법적근거	2
3. 조사연혁	2
4. 조사기준	2
5. 조사방법	2
6. 직종별 임금산출방법	3
7. 이용상의 주의사항	3
8. 평균임금 현황	4
9. 참고사항	4
II. 임금적용 요령	5
1. 시중임금 적용근거	5
2. 노무비지수 정의	6
3. 임금적용 시점	6
4. 참고사항	6
※ 통합 및 명칭변경 직종	
III. 개별직종 임금단가	9
IV. 직종해설	13

I.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4호)

3. 조사연혁

- 1990.11 통계작성승인 제329-21-04호
- 1993.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6504호)
- 1994. 9 표본수 조정(945개 → 1,300개 현장)
- 1998. 5 조사 직종수 조정(173개 → 142개 직종)
- 1998.10 조사 직종수 조정(142개 → 145개 직종)
- 1999.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6504호)
- 2005. 5 표본수 조정(1,300개 → 1,700개 현장)
- 2009. 7 조사 직종수(145개 → 117개 직종) 및 표본수 조정(1,700 → 2,000개 현장)

4. 조사기준

가. 조사 기준기간 : 2011. 9. 1 ~ 9. 30

나. 조사 실시기간 : 2011. 10. 1 ~ 10. 31

다.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 1) 공 사 직 종 : 건설공사업(종합 또는 전문) 등록업체의 현장
- 2) 전 기 직 종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 3) 정보 통신 직종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 4) 문 화 재 직 종 :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 5) 원 자 력 직 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5. 조사방법

- 자체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 실시

6. 직종별 임금산출 방법

$$\circ \text{ 직종별 임금} = \frac{\text{직종별 조사된 총임금}}{\text{직종별 조사된 총인원}}$$

- 조사현장이 20개 이상인 경우 : 1차 평균금액을 중심으로 표준편차의 3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함.
- 조사현장이 5개 이상 20개 미만인 경우 : 1차 평균금액을 중심으로 표준편차의 2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함.

7. 이용상의 주의사항

- 가. 통계전반에 걸쳐 사용한 「-」의 기호는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불능을 나타냄.
- 나. 직종번호 앞의 「*」 표시는 조사 현장수가 5개 미만인 직종, 「**」 표시는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유의하여 적용 (Ⅱ.임금적용 요령 참조)
- 다. 본 조사임금은 1일 8시간 기준(단, 잠수부는 6시간 기준)금액임.

8. 평균임금현황

(단위: 원)

공표일 (조사기준)	전체직종	일반공사직종	광전자직종	문화재직종	원자력직종	기타직종
2012. 1. 1 (2011년 9월)	132,576	126,684	191,119	149,495	165,930	136,032
2011. 9. 1 (2011년 5월)	129,029	123,735	185,429	144,563	159,211	129,806
2011. 1. 1 (2010년 9월)	124,746	120,031	176,985	138,912	151,994	123,801
2010. 9. 1 (2010년 5월)	123,031	118,090	174,848	138,670	152,852	121,205
2010. 1. 1 (2009년 9월)	119,717	114,847	165,652	137,030	147,659	117,682

【주】 1. 2010.1.1자 공표임금부터는 개정된 직종 및 직종수(145→117개)로 조사·공표되어 이전 공표된 평균임금과 차이가 있음

2. 따라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다음의 평균임금을 참고하시기 바람

공표일 (조사기준)	전체직종	일반공사직종	광전자직종	문화재직종	원자력직종	기타직종
2012. 1. 1 (2011년 9월)	132,576	126,684	191,119	149,495	165,930	136,032
2011. 9. 1 (2011년 5월)	129,029	123,735	185,429	144,563	159,211	129,806
2011. 1. 1 (2010년 9월)	124,746	120,031	176,985	138,912	151,994	123,801
2010. 9. 1 (2010년 5월)	123,031	118,090	174,848	138,670	152,852	121,205
2010. 1. 1 (2009년 9월)	119,717	114,847	165,652	137,030	147,659	117,682
2009. 9. 1 (2009년 5월)	117,333	111,664	156,581	130,640	146,190	110,820
2009. 1. 1 (2008년 9월)	117,524	111,661	153,277	134,021	146,937	110,576
2008. 9. 1 (2008년 5월)	114,642	108,559	147,292	132,221	146,159	106,679
2008. 1. 1 (2007년 9월)	110,546	104,226	140,851	126,407	144,482	104,282
2007. 9. 1 (2007년 5월)	107,261	101,241	133,455	124,886	138,384	102,436
2007. 1. 1 (2006년 9월)	104,651	99,171	129,001	121,275	133,106	100,354
2006. 9. 1 (2006년 5월)	102,924	97,633	127,446	120,292	128,767	99,629
2006. 1. 1 (2005년 9월)	101,024	96,236	126,903	118,898	122,684	97,199
2005. 9. 1 (2005년 5월)	97,859	93,530	123,783	118,790	114,464	93,578
2005. 1. 1 (2004년 9월)	97,467	93,240	122,971	119,556	112,684	93,108
2004. 9. 1 (2004년 5월)	97,298	93,190	122,742	120,045	111,078	93,238
2004. 1. 1 (2003년 9월)	96,102	91,847	120,954	119,181	110,222	92,224
2003. 8.13 (2003년 5월)	94,411	89,975	117,838	118,642	109,322	91,170
2002.12.17 (2002년 9월)	92,904	88,487	116,517	116,355	107,531	89,835
2002. 8.14 (2002년 5월)	86,190	81,310	109,916	109,270	103,401	83,005
2002. 1. 1 (2001년 9월)	79,560	74,440	97,462	102,277	100,351	76,099

※ 2002.1.1 이전 공표 평균임금의 변동율은 협회로 문의 바람

3. 일반공사직종 : 직종번호 1001~1091번	광전자직종 : 직종번호 2001~2003번
문화재직종 : 직종번호 3001~3012번	원자력직종 : 직종번호 4001~4004번
기타직종 : 직종번호 5001~5007번	

*직종번호는 「Ⅲ. 개별직종 임금단가」 표 참조

9. 참고사항

-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건설업무-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 문의사항 : 대한건설협회 건설환경실 02-3485-8275

Ⅱ. 임금 적용 요령

1. 시중임금 적용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을 말한다.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2. 노무비지수 정의

○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

-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제3호 및 행정안전부 예규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 제3조(지수조정률 및 용어의 정의) 제3호

3. 임금 적용 시점

○ 2012. 1. 1

4. 참고사항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시중임금단가 적용에 참고할 사항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발체>

- 가.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 나.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현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 다.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라.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2010년 상반기 임금 공표시 직종 통합·폐지 등에 따른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산정방법」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회계제도과-542(2010.4.5) 발체>

- 가. 통합후 존속하는 19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당해 직종 노임단가” 적용
- 나. 통합후 소멸되는 25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다. 폐지되는 10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라. 명칭이 변경된 13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명칭이 변경된 당해직종 노임단가” 적용

- 다만, 노임조사기준도 함께 변경된 시험관련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경우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마. 참고사항

① “당해직종 노임단가”란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상의 ‘개별직종 노임 단가’를 말함

② “당해 직종부문 평균노임”이란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상의 일반공사, 광전자, 문화재, 원자력, 기타부문에 대한 각각의 평균노임을 말함

③ 건설직종 명칭·직종수 조정내역

- 통합후 존속하는 직종(19개 직종) :

보통인부, 특별인부, 조력공, 비계공, 형틀목공, 철근공, 철공, 철판공, 철골공, 용접공(변경전 : 용접공(일반)), 콘크리트공, 준설선기관사, 조적공, 덕트공, 플랜트배관공, 플랜트제관공, 광케이블설치사, H/W시험사, S/W시험사

- 통합후 소멸되는 직종(25개 직종) :

선부, 갱부, 조립인부, 특수비계공, 동발공(터널), 절단공, 용접공(철도), 노즐공,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보통선원, 고급선원, 치장벽돌공, 함석공, 창호목공, 샷시공, 기계공, 기계설치공, 원자력배관공, 원자력제관공, 특급원자력비파괴 시험공,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광통신설치사, H/W설치사, CPU시험사

※ 통합 및 명칭변경 직종

○ 통합직종

연번	당 초	통합직종명	연번	당 초	통합직종명
1	선부+보통인부	보통인부	12	치장벽돌공+조적공	조적공
2	갱부+특별인부	특별인부	13	함석공+덕트공	덕트공
3	조림인부+조력공	조력공	14	창호목공+샷시공	창호공
4	특수비계공+비계공	비계공	15	기계공+기계설치공	기계설비공
5	동발공(터널)+형틀목공	형틀목공	16	원자력배관공 +플랜트배관공	플랜트배관공
6	절단공	철공 철공 철단공 철공공으로 각각 통합	17	원자력제관공 +플랜트제관공	플랜트제관공
7	용접공(일반)+용접공(철도)	용접공	18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비파괴시험공
8	노출공+콘크리트공	콘크리트공	19	광통신설치사 +광케이블설치사	광케이블설치사
9	준설선기관장	+준설선기관사 준설선기관사	20	H/W설치사+H/W시험사	H/W시험사
10	준설선전기사		21	CPU시험사+S/W시험사	S/W시험사
11	보통선원+고급선원	선원		-	

○ 직종명칭 변경

연번	당 초	변경 명칭	연번	당 초	변경 명칭
1	보링공(지질조사)	보링공	8	원자력계장공	플랜트계장공
2	목도	인력운반공	9	원자력덕트공	플랜트덕트공
3	건설기계운전기사	건설기계운전사	10	원자력보온공	플랜트보온공
4	운전사(운반차)	화물차운전사	11	시험관련기사	특급품질관리원
5	운전사(기계)	일반기계운전사	12	시험관련산업기사	고급품질관리원
6	원자력특별인부	플랜트특별인부	13	시험관련기능사	초급품질관리원
7	원자력케이블전공	플랜트케이블전공	-		

Ⅲ. 개별직종노임단가

(단위 : 원)

번호	직종명	공표일	2012.1.1	2011.9.1	2011.1.1	2010.9.1
1001	작업반장		102,573	100,879	98,329	95,671
1002	보통인부		75,608	74,008	72,415	70,497
1003	특별인부		97,283	95,366	92,956	89,835
1004	조력공		88,637	87,687	84,508	82,036
1005	제도사		88,987	87,155	82,428	81,538
1006	비계공		126,924	123,972	120,681	117,090
1007	형틀목공		114,466	105,805	104,308	101,932
1008	철근공		114,884	111,058	109,325	108,427
1009	철공		113,632	104,518	109,857	107,079
*1010	철판공		111,670	107,902	104,801	100,784
1011	철골공		114,141	115,954	111,501	108,881
1012	용접공		118,003	115,090	110,123	108,866
1013	콘크리트공		107,477	102,951	103,765	100,947
*1014	보링공		87,389	90,591	87,934	84,617
*1015	착암공		83,149	88,645	84,470	81,112
1016	화약취급공		107,051	98,620	95,130	91,167
1017	할석공		103,334	95,502	96,658	94,720
*1018	포설공		84,211	88,444	91,993	90,496
1019	포장공		96,988	99,661	99,638	98,247
1020	잠수부		142,472	155,679	152,890	144,015
1021	조적공		109,297	104,754	102,200	100,263
1022	건출공		103,673	102,932	98,569	95,681
1023	건축목공		104,682	106,641	99,722	98,254
1024	창호공		107,183	101,494	97,457	96,641
1025	유리공		101,191	99,467	96,963	94,934
1026	방수공		81,612	77,442	82,178	81,638
1027	미장공		107,403	103,210	100,562	98,280
1028	타일공		115,534	110,585	105,611	104,474
1029	도장공		105,730	100,929	96,119	95,987
1030	내장공		108,686	100,066	97,939	99,352

		공 표 일	2012.1.1	2011.9.1	2011.1.1	2010.9.1
번 호	직 종 명					
1031	도 배 공		89,724	84,052	80,414	83,005
*1032	연 마 공		90,245	86,165	88,551	88,269
1033	석 공		119,030	112,871	106,512	111,569
1034	출 눈 공		88,140	87,103	83,415	83,265
1035	관 널 조 립 공		103,162	102,363	99,232	97,417
1036	지 붕 잇 기 공		114,953	110,267	105,110	104,050
1037	벌 목 부		99,200	97,349	90,524	91,695
1038	조 경 공		95,540	90,072	87,905	89,787
1039	배 관 공		95,187	94,293	92,988	91,564
1040	배 관 공 (수 도)		121,189	113,702	120,692	119,760
*1041	보 일 러 공		97,465	90,595	86,950	84,813
1042	위 생 공		93,707	87,613	83,210	82,119
1043	덕 트 공		88,603	90,070	87,190	84,482
1044	보 온 공		93,112	89,836	86,307	87,698
*1045	인 력 운 반 공		88,865	-	-	93,344
1046	계 도 공		96,970	98,292	99,412	99,599
*1047	건 설 기 계 조 장		92,878	95,501	98,314	96,755
1048	건 설 기 계 운 전 사		109,748	105,406	100,237	97,425
1049	화 물 차 운 전 사		90,701	83,850	85,888	85,587
*1050	일 반 기 계 운 전 사		81,728	75,660	74,998	75,366
1051	기 계 설 비 공		95,011	94,807	91,570	90,102
*1052	준 설 선 선 장		119,215	117,431	112,106	112,072
*1053	준 설 선 기 관 사		98,825	90,764	90,916	88,436
*1054	준 설 선 운 전 사		98,299	92,121	92,858	92,224
*1055	선 원		83,617	81,609	79,138	78,945
1056	플 랜 트 배 관 공		155,819	155,151	148,074	144,674
1057	플 랜 트 제 관 공		132,884	134,336	126,004	131,115
1058	플 랜 트 용 접 공		176,855	164,849	159,756	153,374
*1059	플 랜 트 특 수 용 접 공		176,077	-	180,511	175,802
1060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152,521	145,425	135,389	131,716

		공 표 일			
번호	직 종 명	2012.1.1	2011.9.1	2011.1.1	2010.9.1
1061	플랜트 특별 인 부	101,412	95,482	88,321	90,160
1062	플랜트 케이블 전 공	152,273	143,083	136,505	141,231
1063	플랜트 계 장 공	141,831	146,019	134,801	140,852
*1064	플랜트 덕 트 공	124,424	-	113,986	116,491
*1065	플랜트 보 온 공	138,852	145,855	138,345	142,365
1066	제 철 축 로 공	250,667	250,777	234,667	224,479
1067	비 파 괴 시 험 공	167,675	165,624	156,533	154,526
*1068	특 급 품 질 관 리 원	109,418	-	102,456	101,604
*1069	고 급 품 질 관 리 원	106,383	102,462	97,258	94,662
*1070	중 급 품 질 관 리 원	93,802	91,128	87,691	87,676
*1071	초 급 품 질 관 리 원	90,660	87,968	83,471	82,250
1072	지 적 기 사	195,584	191,190	185,892	181,586
1073	지 적 산 업 기 사	163,870	159,262	152,002	150,144
1074	지 적 기 능 사	130,795	125,193	117,740	115,850
1075	내 선 전 공	122,891	116,754	113,858	108,345
1076	특 고 압 케이블 전 공	222,742	217,870	207,924	203,302
1077	고 압 케이블 전 공	187,417	175,292	166,370	163,237
1078	저 압 케이블 전 공	149,599	138,576	136,290	133,274
1079	송 전 전 공	317,565	326,438	322,635	314,465
1080	송 전 활 선 전 공	363,254	355,581	351,951	343,602
1081	배 전 전 공	195,794	213,248	200,344	193,646
1082	배 전 활 선 전 공	338,780	332,195	327,793	318,440
1083	플랜트 전 공	144,303	136,915	129,208	125,566
1084	계 장 공	139,784	136,021	132,564	128,284
1085	철 도 신 호 공	154,561	153,096	146,262	142,615
1086	통 신 내 선 공	122,975	116,089	112,141	107,365
1087	통 신 설 비 공	124,758	129,480	125,590	124,022
1088	통 신 외 선 공	172,407	165,848	159,344	155,521
1089	통 신 케이블 공	191,885	183,146	172,119	166,346
1090	무 선 안 테 나 공	149,521	142,274	134,812	131,918
*1091	석 면 해 체 공	99,179	98,119	95,386	92,842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2.1.1	2011.9.1	2011.1.1	2010.9.1
2001	광 케 이 블 설 치 사	195,695	192,441	181,474	178,381
2002	H / W 시 협 사	183,444	177,071	173,041	170,735
2003	S / W 시 협 사	194,219	186,776	176,440	175,429
*3001	도 편 수	185,455	178,234	170,360	167,760
**3002	드 잡 이 공	-	-	151,579	-
3003	한 식 목 공	142,682	133,426	127,988	133,382
*3004	한 식 목 공 조 공	103,992	99,755	96,248	95,011
3005	한 식 석 공	148,638	148,117	144,386	141,519
3006	한 식 미 장 공	125,647	124,738	121,091	119,791
3007	한 식 와 공	182,853	170,490	160,314	155,698
*3008	한 식 와 공 조 공	135,713	128,120	126,649	125,457
*3009	목 조 각 공	125,806	123,429	-	-
*3010	석 조 각 공	176,959	162,857	156,098	-
**3011	특 수 화 공	-	184,825	172,059	175,639
*3012	화 공	129,787	129,191	-	123,696
4001	원 자 력 플 랜 트 전 공	163,143	151,628	145,896	144,980
4002	원 자 력 용 접 공	156,656	154,106	145,953	151,834
4003	원 자 력 기 계 설 치 공	163,689	155,383	148,960	149,519
4004	원 자 력 품 질 관 리 사	180,233	175,725	167,167	165,073
5001	통 신 관 련 기 사	155,534	147,395	140,036	136,957
5002	통 신 관 련 산 업 기 사	145,230	136,269	130,718	128,249
5003	통 신 관 련 기 능 사	124,291	123,820	119,248	115,218
5004	전 기 공 사 기 사	137,423	128,372	124,668	120,056
5005	전 기 공 사 산 업 기 사	120,357	115,183	108,837	106,627
5006	변 전 전 공	166,496	157,676	146,732	146,116
5007	코 킹 공	102,894	99,928	96,365	95,213

주) 「*」 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 개미만 직종임

「**」 표시 직종은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그 적용은 앞의 '이용 상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IV. 직 종 해 설

직종 번호	직 종 명	해 설
1001	작 업 반 장	각 공종별로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십장)
1002	보 통 인 부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1003	특 별 인 부	보통 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
1004	조 력 공	숙련공을 도와서 그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협력하는 사람
1005	제 도 사	고안된 설계도면에 따라 도면을 깨끗하게 제도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그리는(작업하는)사람
1006	비 계 공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 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7	형 틀 목 공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 조립, 설치, 해체작업을 하는 목수
1008	철 근 공	철근의 절단, 가공, 조립,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9	철 공	철재의 절단, 가공, 조립, 설치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10	철 판 공	철판을 주자재로 하여 제작, 가공, 조립 및 해체를 하는 사람
1011	철 골 공	H빔 BOX빔 등 철골의 절단, 가공, 조립 및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12	용 접 공	일반철재, 일반기기 또는 일반배관 등의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일반수준)
1013	콘 크 리 트 공	소정의 중량화 및 용적화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비비기와 부어넣기 및 바이브레타를 사용하여 다지기거나 슛크리트를 분사하는 사람
1014	보 링 공	지하수 개발 또는 지질조사나 구조물기초설계를 위한 보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015	착 압 공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반의 천공작업을 하는 사람
1016	화 약 취 급 공	화약의 저장관리 및 장진 발파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017	할 석 공	큰 돌을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깨는 사람
1018	포 설 공	골재를 포설하는 사람
1019	포 장 공	도로포장 등 공사에 있어서 표면처리를 하는 사람
1020	잠 수 부	수중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사람
1021	조 적 공	벽돌, 치장벽돌 및 블록을 쌓기 및 해체하는 사람
1022	견 출 공	콘크리트 면을 매끈하게 마감공사를 하는 사람
1023	건 축 목 공	건축물의 축조 및 실내 목구조물의 제작, 설치 또는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목수
1024	창 호 공	건물 등에서 목재, 철재, 샷시 등으로 된 창 및 문짝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사람
1025	유 리 공	유리를 규격에 맞게 재단하거나 끼우게 하는 사람
1026	방 수 공	구조물의 바닥, 벽체, 지붕 등의 누수방지작업을 하는 사람
1027	미 장 공	시멘트, 모르타르나 회반죽, 석고 프라스타 및 기타 미장재료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내외표면에 바름 작업을 하는 사람
1028	타 일 공	타일 또는 아스타일 등 타일류를 구조물의 표면에 부착시키는 사람
1029	도 장 공	도장을 위한 바탕처리작업 및 페인트류 및 기타 도료를 구조물 등에 칠하는 사람
1030	내 장 공	건물의 내부에 수장재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사람

직종 번호	직 종 명	해 설
1031	도 배 공	실내의 벽체, 천정, 바닥, 창호 등 실내표면에 종이나 장판지 등 도배재료를 부착시키는 사람
1032	연 마 공	인조석 및 테라조의 표면을 인력이나 기계로 물갈기 하여 광택작업을 하는 사람
1033	석 공	대할 및 소할 된 석재를 가공하여 형성된 마름돌과 석재를 설치 또는 붙이거나 일반 쌓기를 하여 구조물을 축조하는 사람
1034	줄 눈 공	석축 및 조적조에 줄눈을 장치하는 사람
1035	판 널 조 립 공	P.C판널이나 샌드위치 판널 등에 보온재를 채우거나 자르는 등 가공하여 조립 부착하는 사람
1036	지 붓 잇 기 공	기와 잇기 및 슬레이트를 절단·가공하여 지붕, 벽체, 천정 등에 부착작업을 하는 사람
1037	벌 목 부	나무를 베는 사람
1038	조 경 공	수목 식재 및 조경작업을 하는 사람
1039	배 관 공	설계압력 5kg/cm ² 미만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1040	배 관 공 (수 도)	옥외(건물외부)에서 상·하수도, 농업용수로 등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1041	보 일 러 공	보일러 조립·설치 및 정비를 하는 사람
1042	위 생 공	위생도기의 설치 및 부대작업을 하는 사람
1043	덕 트 공	금속박판을 가공하여 덕트 등을 가공, 제작, 조립, 설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44	보 온 공	기기 및 배관류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
1045	인 력 운 반 공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목도 포함)
1046	케 도 공	철도의 궤도부설작업 또는 일반 공사장(사업장)내의 운반수단으로 임시 간이궤도를 부설, 해체, 유지 보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47	건 설 기 계 조 장	건설기계 조종원을 통솔, 지휘하는 사람
1048	건 설 기 계 운 전 사	각종 건설기계의 운전과 조작을 하는 운전자(12t이상 트럭 포함)
1049	화 물 차 운 전 사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1050	일 반 기 계 운 전 사	발동기, 발전기, 양수기, 원차 등 경기계 조종원
1051	기 계 설 비 공	일반기계설비 및 기계의 조립설치, 조정, 검사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
1052	준 설 선 선 장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선장
1053	준 설 선 기 관 사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사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포함)
1054	준 설 선 운 전 사	준설기를 장치한 준설기계 운전자
1055	선 원	선박의 운항을 위한 각 부서의 선원
1056	플 란 트 배 관 공	유해가스 이송관,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배관 또는 설계압력 5kg/cm ² 이상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원자력배관공 포함)
1057	플 란 트 제 관 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강제구조물과 압력용기의 가공, 제작시공 및 보수를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58	플 란 트 용 접 공	유해가스 이송관 및 유해가스 용기를 용접하거나, 플랜트 기기 및 플랜트 배관을 용접하거나, 철재·강관(합금강제외)을 TIG, MIG 등 용접하거나, 각각의 설계압력이 5kg/cm ² 이상인 기기 또는 배관의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중·고급수준)
1059	플 란 트 특 수 용 접 공	각각의 사용압력이 100kg/cm ² 이상인 배관 또는 압력용기를 용접하거나, 합금강을 용접 하거나, 합금강을 TIG, MIG 등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특급수준)
1060	플 란 트 기 계 설 치 공	정밀을 요하는 플랜트 기계설비의 조립, 설치, 조정, 검사 및 보수를 하는 사람

직종 번호	직 종 명	해 설
1061	플랜트특별인부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전문작업을 보조해주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2	플랜트케이블전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케이블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3	플랜트계장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계장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4	플랜트덕트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덕트의 제작·설치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5	플랜트보온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기기 및 배관류 등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6	제철축로공	제철용 각종로(1,000°C~1,400°C) 내화물시공(R오차 ±1mm이내) 및 보수를 하는 사람
1067	비파괴시험공	일반 또는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등 시설물의 기기 및 배관 등의 용접부위 또는 구조물 주요부위의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검사자)
1068	특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에 해당하는 특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 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69	고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에 해당하는 고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 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0	중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에 해당하는 중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 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1	초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에 해당하는 초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 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2	지 적 기 사	지적산업기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에 종사하는 사람
1073	지 적 산 업 기 사	지적기능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에 종사하는 사람
1074	지 적 기 능 사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에 종사하는 사람
1075	내 선 전 공	옥내전선관, 배선 및 등기구류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76	특고압케이블전공	특별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7,000V 초과)
1077	고압케이블전공	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교류 600V 초과, 직류 750V초과 7,000V 이하)
1078	저압케이블전공	저압케이블 및 제어용 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교류 600V이하, 직류 750V이하)
1079	송 전 전 공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의 철탑 및 송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0	송 전 활 선 전 공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 송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송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직종 번호	직 종 명	해 설
1081	배 전 전 공	22.9kv이하의 배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주를 세우고 완금, 애자 등의 부품과 기계류(변압기, 개폐기 등)를 설치하고 무거운 전선을 가설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
1082	배 전 활 선 전 공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배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배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1083	플 랜 트 전 공	발전소 증공업설비·플랜트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4	계 장 공	기계, 급배수, 전기, 가스, 위생, 냉난방 및 기타공사에 있어서 계기(공업제어장치, 공업계측 및 컴퓨터, 자동제어장치 등)를 전문으로 설치, 부착 및 점검하는 사람
1085	철 도 신 호 공	철도신호기를 설치 등 신호보안 설비공사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6	통 신 내 선 공	구내에 통신용 합성수지관 및 배선을 시공 또는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7	통 신 설 비 공	무선기기, 반송기기, 영상·음향·정보·제어설비 등의 시공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8	통 신 외 선 공	전주, PE내관(전선관)포설, 조가선, 나선로 등의 시공 및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9	통 신 케 이 블 공	각종 동선케이블의 가설, 포설, 접속, 연공, 시험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90	무 선 안 테 나 공	철탑, 항공, 항만, 선박통신, 철도신호의 각종 안테나설비 설치 및 도색 등 유지보수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91	석 면 해 체 공	건축물, 시설물, 설비 등에서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2001	광케이블설치사	광케이블 및 전송장치(단말장치, 중계기 포함)의 설치, 각종시험, 교정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002	H / W 시 험 사	전자교환기, 기지국, 컴퓨터시스템의 기계설비(하드웨어 포함)의 설치, 시험, 분석, 운영 시공지도,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003	S / W 시 험 사	전자교환기, 기지국, 컴퓨터시스템(CPU 등 포함)의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설계, 작성, 입력, 시험, 분석, 설치,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001	도 편 수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한식목공, 한식석공 등을 총괄, 지휘하며 여러 전문 직종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도석수 포함)
3002	드 잡 이 공	내려앉거나 기울어진 목조건조물, 석조건조물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사람
3003	한 식 목 공	도편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목재마름질 등 목조건조물의 나무를 치목하여 깎고 다듬어서 기물이나 건물을 짜세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3004	한 식 목 공 조 공	전통한식 건조물의 치목, 조립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목공을 보조하는 사람
3005	한 식 석 공	도편수(도석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흑두기 등 석재를 마름질하여 기단, 성곽, 석축 등 석조물 조립·해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3006	한 식 미 장 공	미장 바름재(진흙, 회삼물, 강회 등)를 사용하여 한식벽체·양벽·온돌·외역기 등을 전통기법대로 시공하는 사람

직종 번호	직 종 명	해 설
3007	한 식 와 공	전통한식 건조물의 지붕을 옛 기법대로 기와를 잇거나 보수하는 사람으로 연와공사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
3008	한 식 와 공 조 공	한식와공의 지도를 받아 전통한식 건조물의 기와를 잇는 사람으로 한식와공을 보조하는 사람
3009	목 조 각 공	목조불상, 한식건축물의 장식물인 포부재, 화반, 대공 등의 조각을 담당하여 새김질을 하는 사람
3010	석 조 각 공	석조불상, 기단우석, 전통석탑 등 석조건조물의 조각을 하는 사람
3011	특 수 화 공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안료배합 및 초를 낼 수 있고 벽화를 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
3012	화 공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타분, 채색 및 색긋기, 먹긋기, 가칠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4001	원자력플랜트전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발·변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
4002	원 자 력 용 접 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용접작업을 하는 사람
4003	원자력기계설치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 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기계조립, 설치 및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4004	원자력품질관리사	원자력 품질관리규정(10 CFR 50 APP.B)의 요건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 후 관리사자격을 취득하고 원자력관련 제규정 및 규격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 따라 품질보증 업무를 하는 사람
5001	통 신 관 련 기 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유지보수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5002	통신관련산업기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유지보수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5003	통신관련기능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능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및 엔지니어링 업무 보조자로 종사하는 사람
5004	전 기 공 사 기 사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5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6	변 전 전 공	변전소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7	코 킹 공	창틀, 옥조 등의 방수나 고정을 위하여 코킹작업을 하는 사람